

---

- 2016년 하반기 읍면동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20,000원

【제 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계약일자	계 약 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인지 미소화액
2016.03.22	▽▽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공사	●●건설(주)	당초 8,220,000 변경 17,990,00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아파트 진입로 미끄럼방지시설공사'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변경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변경계약체결 시 2만 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2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11건	1건	10건	
2015	8	1	7	
2016	3	-	3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민원안내의집 현판제작’ 외 10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45천 원을 미소화하고, 235천 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4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민원사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민원명	민원인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	지연일
계	7건				
주민등록증분실신고	000	2014.12.10	2014.12.11	2014.12.15	4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	111	2015.04.10	2015.04.10	2015.04.13	3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	222	2015.04.21	2015.04.22	2015.05.29	37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	333	2015.08.10	2015.08.10	2015.08.12	2일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444	2015.08.18	2015.08.18	2015.08.19	1일
주민등록증분실신고	555	2015.09.10	2015.09.11	2015.09.14	1일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666	20151112	2015.11.17	2015.11.24	7일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 외 6건에 대하여 처리기한 내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에도, 지연하여 민원처리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 시 관련 법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민원사무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단위:원)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 미소화액
2015.11.12	▲▲청년회 사무실(콘테이너)구입	△△종합건설(주)	20,000,000	20,000
2016.07.06	□□□ □□1길 핸드레일 제작 구매	▣▣산업(주)	12,630,00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청년회 사무실(콘테이너)구입' 외 1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계약체결 시 각 2만 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4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60,000원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8건	1건	7건	
2014	1		1	
2015	2		2	
2016	5	1	4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6반 도로정비공사’ 외 7건을 시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60천 원을 미소화하고, 255천 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60,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신분상 조치 1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주민센터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38건	3,673,800				
2014	4건	330,300	불입참조	★★★주민센터	불입참조	
2015	19건	1,841,900	”	”	”	
2016	15건	1,501,600	”	”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10.24부터 2016.09.13.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38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40,000원

【제목】 수입인지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지 미소화 내역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인지 미소화액
2015.03.09	노후 마을애프 교체 및 시설정비	●●가전마트	14,628,000	20,000
2015.07.14	쓰레기수거용 박스 수선	♣♣♣♣기계	10,950,000	20,000

### 2. 내 용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 등의' 수입인지를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인 계약서에 첨부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노후 마을앰프 교체 및 시설정비' 외 1건을 계약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이므로 계약 체결 시 각 2만 원의 인지를 소화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화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지를 소화하시기 바라며, 미징구한 40,00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5~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3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연도	계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건수	지역개발채권 초과소화 건수	비고
계	9건	2건	7건	
2015	6	2	4	
2016	3	-	3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 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용차량 부속품 교체 및 구입’ 등 9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35천 원을 미소화하고, 65천 원을 추가로 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35,000원을 소화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통계목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계			5건	3,382,000
1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5.01.14	직원 회식비	989,000
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5.03.26	직원 회식	750,000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5.07.28	직원 송환영회식	611,000
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5.08.27	여름해변 운영지원업무 격려 만찬	510,000
5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5.10.01	□□□ 새마을부녀회 간담만찬	522,000

## 나. 업무추진비 계좌이체 집행 내역

연도	통계목	지출건수	금액(원)	비고
계		34건	8,450,700	
201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건	637,800	
2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건	4,126,9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건	2,019,000	
201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건	1,667,000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또한 각 업무추진비 공통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표 1]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회식」 등 총 5건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적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각종 물품의 구매, 회식 등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 형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89,980원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정적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계약명	도급사	계약금액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비 고
계	2건				
2016.04.21	●●리 진입로포장 및 석축공사	■■■건설	8,830,000	41,979	동일 세금계산서 날짜 수정 제출
2016.04.21	●●리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	17,057,000	89,980	

##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리 진입로포장 및 석축공사” 등 2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보전비를 비교 정산 시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기업에서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날짜만 수정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대가를 지출하는 등 준공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시고, 미정산한 89,980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3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인증기 수입금 납입 지연 현황

연도	납입 지연 건수	징수금액(원)	은행납부일자	납부자명	지연일수	비고
계	81건	4,089,400				
2014	6건	229,200	불입참조	□□□사무소	불입참조	
2015	16건	756,100	”	”	”	
2016	59건	3,104,100	”	”	”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redacted]에서는 금고소재지가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10.02 부터 2016.08.25.까지 제증명발급 등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81건을 지연 납입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기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 주시고,
-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2명(11번 병합)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급 40,000원

【제 목】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주민등록 과태료 미감경 현황

(단위 : 원)

연번	성명	부과일자	부과사유 (지연기간)	착 오 부과액	정 상 부과액	비 고
계	3건			80,000	40,000	
1	111	2014.10.1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미만)	32,000	16,000	16,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2	222	2014.10.13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6개월미만)	32,000	16,000	16,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3	333	2016.07.18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지연 (1개월 이내)	16,000	8,000	8,000원 과다부과 (미성년자 미감경)

## 2. 내 용

「주민등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의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첨 1]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3건 40,000원을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다 부과된 주민등록 과태료 40,000원을 환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증빙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305,000원

【제목】 주민세(법인 균등분, 재산분) 과세 누락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원)

구분	연도별	건수	계	주민세	지방교육세	비고
계		16	1,305,000	1,200,000	105,000	
법인균등분	소계	15	1,155,000	1,050,000	105,000	
	2014	8	495,000	450,000	45,000	
	2015	6	495,000	450,000	45,000	
	2016	1	165,000	150,000	15,000	
재산분	소계	1	150,000	150,000		
	2014	1	150,000	150,000		

※ 세부내역 : 붙임

## 2. 내 용

○ 주민세(법인 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8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주민세(재산분)는 「지방세법」 제74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인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에 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4개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1건, 150천 원과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법인 균등분)(10개소) 15건, 1,155천 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주민세(법인 균등분, 재산세) 16건 1,305,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과세 조치하시고, 과세 부과시 관련 과세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4~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200천원

【제목】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표1】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 초과 현황

(단위 : 명, 일)

연번	성명	장애유형	등급	재진단기한	재진단등록일	비고
계	3명					
1	111	시각	6급	2015.02.09	2015.04.20	
2	222	시각	6급	2015.08.01	2015.08.21	
3	333	지적	3급	2015.12.01	2016.06.23	

【표2】 장애수당 과오지급 현황

(단위 : 명, 원)

성명	생년월일	계	2016년	비고(금액산정)
444	641105	200,000	○ 장애수당 200,000원 (1월~5월)	월40,000원×5개월

## 2.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을 실시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기한일 3개월 전에 재판정 안내문을 통보하고, 지정된 기한 내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정 이행을 촉구하여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 및 2주간의 의견청취 후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에서는 위 【표1, 2】와 같이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3명이 재판정 기한을 초과하였고, 장애수당 200천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미이행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처 분 요 구】

- 과오 지급된 장애수당 200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환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사무소

【시행년도】 201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154,000원

【제목】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과다계상액 (천원)	시공회사	비고
계 - 4건			1,154		
■■■ ◆◆리 배수로 설치공사	'16.10.26.	18,550	△ 353	(주)♡♡	
♠♠리외 2개소 주택뒤 사면 정비공사	'16.10.06.	18,210	△ 851	(주)□□	
▷▷리 소하천(구거) 석축 정비공사	'16.09.22.	19,680	△ 85	(주)●●	
☞☞리 주택진입로 포장공사	'16.10.26.	5,320	135	(주)☹☹	

## 2. 내 용

건설공사를 설계할 경우 현지 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OOO]에서는 2016.10.26일 (주)♡♡과 계약체결 시공중인 근덕면 ◆◆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각종 자재(레미콘, 잡석 등) 운반은 현장 진입도로 등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장비를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진입로가 협소하고 급커브 등을 사유로 경운기운반을 적용하여([OOO] ◆◆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2.5톤 D.T 진입가능, 교가1리의 2개소 주택뒤 사면 정비공사는 1.0톤 D.T 진입가능) 총 1,20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또한, 2016.09.22일 (주)□□와 계약체결 시공중인 ♠♠리 소하천(구거) 석축정비공사에 대하여 깐잡석 운반비 산출시 깐잡석 자재단가가 상차도 단가임에도 상차(적재)품을 별도 적용하여 총 85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보험료를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6.10.26일 (주)●●와 계약체결 시공중인 ☼☼리 주택진입로 포장공사의 경우 건강보험료(1.7%), 연금보험료(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미반영 하였고, 하도금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는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적용하여 총 135천원을 과소 계상하는 등 공사 설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의 과다 및 과소 계상된 1,154천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과다·부실 등의 설계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